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3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주호영·권영세·강선영

김위상 · 김종양 · 정희용

이헌승 • 고동진 • 김용태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의 종결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의결된 경우에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당초 정해진 회기에 맞추어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기를 단축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를 통해 의결 가능한 회기 변경의 방법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위해 요구되는 가중과반 특별 의결정족수(재적의 원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이후 해당 회기를 결정 · 변경하고

자 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무제한 토론을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후 해당 회기를 정하거나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 요구 이후 회기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본 회의의 회기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⑩ (생 략)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①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
	된 후 해당 회기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